对此对当五00色的这个战场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칠구 의원 외 18명)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칠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

발의연월일: 2024. 1. 15.

발 의 자: 이칠구·김대진·이철식

한창화 • 박규탁 • 박선하

권광택・강만수・노성환

백순창 · 정경민 · 황두영

손희권 • 박영서 • 박승직

김일수 · 최태림 · 이춘우

서석영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추가경정예산심 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까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 을 압축하여 수행하고 있음.
-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습 등의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

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교육연수의 방식 및 교육연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3. 조 례 안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검토 완료
 - 정책지원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40, '24. 1. 9.)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432, '24. 1. 10.)
 - 다. 규제 검토의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혁신담당관(정책기획관-432, '24. 1. 10.)
 - 라. 해당부서 의견: 해당 없음
 - 의정홍보담당관(의정홍보담당관-48, '24. 1. 9.)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배양을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원당선인"이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 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 2. "교육연수"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 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 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2월 말일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
-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 에 반영해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법과 관련된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배양을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3조 1항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습 등에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이라서 구체적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계획이전까지는 비용 추계가 불가능하 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4. 작성자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지방행정주사 김순덕(054-880-5083)



경 상 북 도



수신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의정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1. 의정홍보담당관-39(2024, 1, 9.)호와 관련입니다.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 <mark>인</mark>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습하는 등의 의정연수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연수 시행계획수립, 교육연수 실시, 종합평가 실시 등에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정되나,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교육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비용의 기술적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의견은 적정함.			
	 다만. 해당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추무관 등	<u>2€</u>	맥산총괄림장	권미속	예산당당	관 전경 2024 윤희만	. 1. 9.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	⊉-492	(2024,	1. 9.3	접수	의정홍보담당관-	47 [2024,	1, 9.)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	등원면 도	청대로 455, 경복도	d	1	http://www.gb.ga.kr	
전화번호 054-	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	271@korea,kr	/ 대국인	공개
		*202	25 APEC 정상회의	리" 경주기	가 최적지입니다	1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고
引着十	mg	
司四支	John	
b) 22 1	alm	
3 t 7. 50l	- mt	
邓开村	13/3/3	
W (4)3-	M	
72 25 M	morny	
2年 松午	784	
h Kban	fin	
对全当	The state of the s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 고
N M N	2 mongin	
30 4 m	men.	
관 최건	Doffen	
1gt of M	06	
多为和		
The oly.	THE.	
到和我	25	
0/ 324	An	
从公司	34	